

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규정

수지초등학교

2025년 12월 19일 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(이하 “임원 선거” 라 한다)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

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 선거와 부회장 선거에 적용한다.

제3조 (선거관리위원회)

- ① 임원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선출 임기 학년도 6학년 학생 중, **급당 1명 학생들로** 조직하며,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.
- ④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이나 투표로 선출하고, 위원명단을 선거일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.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.
-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재선거,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. 단, 차기 학급자치회 임원 선거에서의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한다.
-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⑧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1. 후보자 등록관리, 후보자 자격 심사, 선거 운동 관리, 투표와 개표관리, 당선인 결정, 당선인 공고 등 선거 관리에 관한 일
 2. 투표 참여 안내,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
 3. 선거 규정 위반자 감시, 위반자에 대한 경고,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
 4. 기타 선거 관리에 따른 중요 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

제4조(선거일 공고)

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선거권자)

임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(이하 선거권자 라 한다)는 본교에 재학 중인 4학년(선출 임원의 임기 기준) 이상으로 선거일에 출석한 학생으로 한다.

제6조(선거인명부 작성)

- ① 학급자치회는 선거일 일주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. 이 때 학급명렬표 사본을 선거인명부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.
- ② 학급자치회는 선거일에 선거인명부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선거인명부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고,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.

제7조(후보자 자격)

- ① 임원 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며, 회장은 6학년 학생이, 부회장은 5학년과 6학년 학생이 입후보할 수 있다.
- ②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.
- ③ 1학기 학생자치회 임원은 2학기 학생자치회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.

제8조(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)

- ①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거권자에게 공개한다.
 - 1. 적용 대상은 학생자치회 회장 후보자와 부회장 후보자로 한다.
 - 2. 적용 기간은 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1년 이내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.
 - 3. 징계 및 조치 사항은 적용 기간 중에 받은 모든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.
-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기간은 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후보자 등록)

- ① 임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해당 임기에 4~6학년인 학생 30명의 추천을 받아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. 단, 1명의 투표인이 임원 종류별로 1명의 후보만 추천할 수 있다.
 - 1.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
 - 2.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
 - 3. 추천서 1부
 - 4. 공약계획서 1부
- ② 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 후보 등록 마감일을 1일 연장한다.
- ③ 등록 마감일이 연장될 경우 입후보직의 변경이 가능하다.
- ④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임원 선거 후보자의 기호를 위원회에서 추첨으로 결정하고,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등록 무효와 사퇴)

-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.
-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선거 운동)

- ①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.
- ② 선거 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중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된 사람만 할 수 있으며,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선거운동원은 선거권자 중에서 후보 1인당 1명까지로 제한한다. 단, 최종 등록된 후보자가 총 10명(회장 후보, 부회장 후보 합계)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선거운동원은 등록하지 않는다.
- ④ 선거 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.
- ⑤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방법을 활용한 선거 운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세부 운영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하여 실시한다.

제12조(후보자 홍보 포스터, 피켓 등)

- ① 후보자는 기호·성명·사진·공약 사항 등 자기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 포스터 1매(4절지 크기)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후보자 홍보 포스터를 심의하고,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붙여야 한다.
- ③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후보자의 기호·성명·사진·공약 사항·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피켓(후보자당 1개)을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. 피켓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심의를 받은 경우에만 선거 운동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13조(소견 발표회)

- ① 후보자는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소견 발표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.
- ② 소견 발표 시간은 **전체 입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정하되** 타 후보자를 비난하거나 학생으로서 할 수 없는 공약을 제시하는 소견은 발표할 수 없다.
- ③ 소견 발표 전에 위원회에 소견문을 제출하여 미리 심의받아야 한다.
- ④ 감염병 등 등교중지 사유(체험학습 및 단순 병결 등 제외)로 인해 온라인 방법을 활용한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.

제14조(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)

- ① 선관위는 후보자, 선거운동원,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 무효의 처분을 한다.
 1. 경고 사유의 행위
 - 가. 후보자 간 다툼
 - 나. 정해진 시간과 장소 외에서의 선거 운동
 - 다.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
 - 라. 선거 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
 2.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의 행위
 - 가. 선거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

나. 선거권자에게 음식물,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

다.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(경고 2회부터 등록 무효 처리)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
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, 보호자에게 알린다.

제15조(투표)

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.

② 투표는 선거권자가 선거인 명부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
기표(“○”)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.

③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기호순에 의하여 작성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.

④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.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
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.

⑤ 후보자는 투표 참관인 1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,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
⑥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 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
옮겨야 한다.

⑦ 감염병 등으로 인해 재검표가 가능한 온라인 방법을 활용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. 이때 세부 운영 방법은
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로 결정하여 실시한다.

제16조(개표)

①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선관위 주관으로 실시하며 위원이 개표 사무를 담당한다. 다만 위원만으로
개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.

② 후보자는 본인 이외에 개표 참관인 1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,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
제출해야 한다. 단, 최종 등록된 후보자가 총 10명(회장 후보, 부회장 후보 합계)을 초과할 경우 개표
참관인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.

③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.

1. 한 후보자의 난(번호, 이름, 칸 관계없음) 2개 이상의 “ ” 표를 한 것
2. 후보자의 구분 선상에 “ ” 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
3. “ ” 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

④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.

1.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
2. 어느 난에도 “ ” 표를 하지 아니한 것
3. 2개 이상의 난에 “ ” 표를 한 것
4.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
5. “ ”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(투표자와 후보자의 이름 포함)를 한 것
6. 기타 사항은 위원회 협의에 따른다.

[예시]

유효투표

학생회 회장선거투표

기호	성명	기표란
1	박윤유	
2	안정최	
3	장신오	
4	최한양	
5	김홍곽	

공명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

무효투표

학생회 회장선거투표

기호	성명	기표란
1	박윤유	
2	안정최	
3	장신오	
4	최한양	
5	김홍곽	

공명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

학생회 회장선거투표

기호	성명	기표란
1	박윤유	
2	안정최	
3	장신오	
4	최한양	
5	김홍곽	

공명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

학생회 회장선거투표

기호	성명	기표란
1	박윤유	
2	안정최	
3	장신오	
4	최한양	
5	김홍곽	

공명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

학생회 회장선거투표

기호	성명	기표란
1	박윤유	
2	안정최	
3	장신오	
4	최한양	
5	김홍곽	

공명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

학생회 회장선거투표

기호	성명	기표란
1	박윤유	
2	안정최	
3	장신오	충다
4	최한양	
5	김홍곽	

공명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

학생회 회장선거투표

기호	성명	기표란
1	박윤유	
	안정최	
3	장신오	
4	최한양	
5	김홍곽	

공명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

학생회 회장선거투표

기호	성명	기표란
1	박윤유	✓
2	안정최	
3	장신오	
4	최한양	
5	김홍곽	

공명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

⑤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.

⑥ 온라인 방법을 활용하여 투표를 한 경우 개표 방법 및 결과 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하여 실시한다.

제17조(당선인 결정)

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 선거의 후보자 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, 부회장선거에 나온 후보자 중에서 다득표 순으로 후보자 2인을 각각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
② 개표 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
- ③ 단일후보의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한다.
- ④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.

제18조(이의신청 및 당선무효)

-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,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 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③ 당선된 후보자가 당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이용하여 당선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. 당선이 무효화 되었을 경우 차점자를 당선자로 한다.

제19조(보궐선거)

- ① 학생자치회 임원이 전학 등의 사유로 공석이고 해당 학기의 수업일수 2/3일 이상 남았을 경우,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
- ② 보궐선거 미실시로 회장 유고의 경우 회장직은 6학년 부회장이 회장의 역할을 대행하고 부회장이 유고일 경우는 공석으로 둔다.

제20조(보칙)

- ①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-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(교감, 담당부장, 학생자치 담당교사)의 자문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- ③ 각 호의 서식은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, 변경되어 사용될 수 있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
2. 2013년 3월 6일부터 개정 · 시행한다. (9조 다항, 당선 무효 시 차점자 당선제)
3. 2014년 3월 5일부터 개정 · 시행한다.
 - 2조 가항, 회장 후보자 등록 개정
 - 2조 나항, 부회장 후보자 등록 개정
 - 4조 가항, 후보자 선거운동원 등록 개정
 - 9조 라항, 단일후보 무투표 당선 신설
4. 2017년 5월 12일부터 개정 · 시행한다.
 - 2조 라항, 전학 예정 어린이 입후보 불가 신설
 - 10조, 전교 임원 유고 시 재선출 신설
5. 2017년 7월 7일부터 개정 · 시행한다.
 - 2조 마항, 후보자 공석 시 공고일 연장 신설
 - 2조 바항, 후보자 공석 시 정회장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정회장 후보 차득표자

부회장 선출 신설

- 2조 사항, 후보자 공석 시 5학년 부회장 후보 중 최다득표자와 차득표자 2명을

전교 어린이회 임원 부회장 선출 신설

6. 2021년 3월 2일부터 개정·시행한다.

- 4조 다항, 5조 라항, 6조 라항, 7조 마항, 감염병 등으로 인해 온라인 방법을 활용한 선거 운동 및 투표 실시
신설

7. 2022년 8월 22일부터 개정·시행한다.

- 2조 가항 및 나항, 투표인 10명의 추천에서 투표인 30명의 추천으로 개정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